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6. 12.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용역사업 입찰공고 적정성 및 제안서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기관주의) .	3
2. 학과 실습동 사무실 국유재산 허가에 관한 사항(시정)	6
3. 교원 학술연구지원 사업 운영 및 결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시정)	8
4. 물품의 정기재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10
5.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시정)	11
6.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	13

7. 고가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	15
8. 발전기금의 운영 및 규정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	17
9.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권고)	19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재청 감사 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어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구 현황은 학사기구 6개 학과, 2개 대학원(행정기구 1처 3과), 전통문화교육원 2개과, 총 90명(교원 38명, 직원 52명)이며, 2016년 예산은 18,722백만원으로 이번 자체종합 감사에서는 회계감사와 더불어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사항, 대학 교육 환경, 교원 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11. 07. ~ 18.까지 총 10일간 감사인력 4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12. 13.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 관 주 의

제 목 용역사업 입찰공고 적정성 및 제안서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학생과, 전통문화연수원 교육기획과)

내 용

가. 「국가계약법」에 따른 이윤 적용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23조(개산계약) 제①항에 따라 시험·조사·연구용역 계약인 경우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③항에 따라 사후 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원가계산서 상 이윤의 산정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윤을 계상하고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등에 정해져 있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체제개편 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이윤을 포함하여 추정가격을 54,545,454원(부가세 제외)으로 공고하면서 이윤 등에 대해 ‘개산계약’에 따라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해 입찰 공고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하나 이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윤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계약 (2014.09.29.~2015.02.27./ 56,941,500원)을 체결하면서 이윤을 다른 항목에 계상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함에 따라 예산(4,705,909원)이 과다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관련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제①항, 제④항에서는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는 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사업 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7명 이상

그러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2015~2016년까지 실시한 제안서 평가 용역 중 다음과 같이 내부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분하거나 사업의 특성상의 이유를 들어 전체를 내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안서 평가위원 외부위원 정족수 미달 현황】

(단위: 천원)

년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평가위원	비고
201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술정보관 국내·외 도서자료 구매	2016.05.24.~ 2016.12.31.	190,000	주)○○○○○ ●●●	6 (내부6)	전체를 내부위원으로 선정
2016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과정(배첩,철문)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2016.05.11.~ 2016.12.06.	49,000	●●대학교 산학협력단 ●●●	5 (외부3, 내부2)	자체 교수(1명)를 외부로 분류
2015	2015년 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책자	2015.05.18.~ 2015.06.04.	35,000	주)△△△ △△△△△△△	4 (외부2, 내부2)	과반수 미달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은 앞으로 이윤을 지급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낙찰자로 결정될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개산계약의 원칙을 준수 하시고, 제안서 평가시 「문화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 정 요 구

제 목 학과 실습동 사무실 국유재산 허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내 용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이 구분과 종류) 제①항에서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0조(사용허가) 제①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인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허가할 수 있고, 같은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 계약이 원칙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는 대학 교원기업에 대해 2014년부터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하였다.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현황】

(단위: m^2)

재산 구분	재산 소재지	건물명 명 위치	허가기간	공부 면적	허가 면적	사용자	사용목적
공용 재산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전통건축학과 실습동 사무실	2014.03.01.~ 2019.02.28. (연차 계약)	397.90	43.17	(주)●●●● ★ ★ ★	창업 사무공간

그러나, 상기 행정재산은 전통건축학과 학생들의 실무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동으로 「국유재산관리법」상 실습 용도가 아닌 창업사무 공간 사용 목적으로는 국유재산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수의의 방법으로 교원 창업 사무공간 사용 용도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 원칙에 맞지 않는 전통건축학과 실습동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 정 요 구

제 목 교원 학술연구지원 사업 운영 및 결과물 제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 활동 활성화 도모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교원 학술연구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심사 및 중간평가를 거쳐 교원의 연구과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동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원은 ‘교원 학술연구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6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연구결과물 제출 지연 관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13~‘15년 기간 중 ‘천연약재를 이용한 석조문화재 생물막 제거 연구’ 등 총 21건(177,500천원)의 교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하였으면, 사업비를 지원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위 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16. 11월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총 21건 중 11건의 결과물이 지연(8건) 및 미제출(3건) 되었다.

또한 2014년도에 지원한 ‘문화행정과 정책’ 사업과 2015년도에 지원한 ‘문화상품 수출의 외부효과 연구’ 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 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였으면 지원 중단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1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또는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문화상품

수출의 외부효과 연구' 사업의 경우 '15. 8월 사업 지원중단 이후 '16.11.11 현재까지 최종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교원학술연구지원 사업 관련 세부 규정 정비 관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교원학술연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원 학술연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 또는 지침 등이 미비하여, 사업계획 변경(과제 내용, 제출 기한 등) 사유 발생 시 변경·승인에 대한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중간평가 결과 사업지원 필요성이 낮아 지원을 중단한 사업과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사업에 대한 지원비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교원학술연구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결과물을 미제출한 건에 대하여는 결과물 제출 촉구 및 지원 사업비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적정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 정 요 구

제 목 물품의 정기재물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내 용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 및 제35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 결정한 후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한 후 전자태그를 붙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5.12.1.~2015.12.31. 기간 중 ‘노화시험기’ 등 총 397종, 397개(751,692,730원)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2016.1.18.~ 2016.1.22. 기간 중 ‘2015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6.11.15. 전자태그 부착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2015.12.1.~2015.12.31. 기간 중 구입한 물품 397개에 대해서는 전자태그가 미부착 되었으며, 실제 장비의 설치 장소와 대장에 기록된 장소가 상이한 사례가 있는 등 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전자태그가 미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 조속히 전자태그를 부착하시고, 향후 물품의 관리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 정 요 구

제 목 산학협력단 회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용

가. 회계관리 관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은 외부 학술용역 등을 수행하며 그 용역비의 일부(3%~4%이내)를 간접경비로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시켜, 산학협력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매년 약 80,000천원)하며, 지출 후 잔액은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경비가 매년 누적됨에 따라 운영 경비의 지출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적정 운영 경비를 제외한 간접경비를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 이자 수입을 증가 시킴이 타당하나 2016.11월 감사시점까지 간접경비 전체 금액을 이자가 거의 발생 하지 않는 일반예금(이자율 0.1%)에 관리하고 있다.

년도	2012	2013	2014	2015
간접경비 잔액누계	75,549천원	152,937천원	231,133천원	348,572천원

* 시중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1.5%('16.11월) / 2.5~3%('14.1) / 2~2.5%('15.4)

또한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사업 수행 시 마다 계좌를 개설하여 현재는 78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중 25계좌가 사업이 완료된 휴면계좌로 해지가 필요한 실정이고 보유계좌 대부분이 각각의 연구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중복으로 운영 중에 있어 이자 발생 및 정산 등 회계처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비 카드' 59개를 만들었으나 사업이 종료된 13개가 미회수 된 상태로 있어 카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나.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관리 관련

2015~2016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수주한 연구용역 (교원학술연구,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도서를 책임 연구원 등이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관련 도서 374권(약 13,000천원)을 구입하였으나 현재는 각자의 책임연구원 연구실 등에 보관·관리하고 있어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인 만큼 산학협력단 자체 재산으로 귀속시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지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간접경비는 이자 수입 증가 노력, 휴먼계좌 해제, 계좌 중복운영 방지, 미 회수된 13개 연구비카드 회수 등 회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산학협력단 연구비로 구입한 도서에 대해서는 자체재산으로 귀속시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학사운영 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사운영 규정」 제58조(성적평가)에 따라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성적등급별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

A등급	A등급과 B등급의 합	C 등급 이하
30% 이내	70% 이내	50% 이내

대학 학생 성적에 대한 평가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과제제출, 출석률 등을 계량화된 점수로 표기하려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성적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65	64~60	59~0
등 급	A+	A	B+	B	C+	C	D+	D	F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2015년 2학기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시설경영론’ 과목 수강인원은 총 18명으로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면 A등급은 5명, B등급 7명, C등급 6명으로 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초 부여된 성적에 따르면 A등급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이 7명으로 이중 2명이 동일 91점을 받았고, B등급인 80점 이상이 11명으로 그 중 3명이 동일한 86점을 받았으며, 해당 강사는 학칙에 따라 ‘상대평가’를 적용하여 점수를 재환산하고 학점을 부여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동일 점수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 없이 등수를 책정하였으며, 최종 환산된 점수와 각 세부항목의 합산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동일한 점수자에 대한 상대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고가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내 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 제1호는 산학협력계약에는 계약의 이행에 드는 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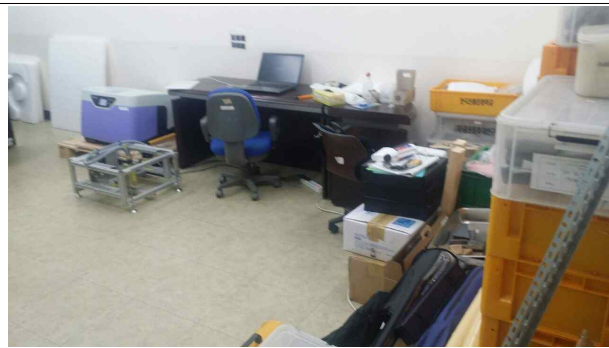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구입가액 50,000천원 이상의 실험분석장비로 ‘분광계’ 등 20여종을 보유하고 있고, 주로 학생 교육 등에 활용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타 대학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사업 수행 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안료분석 표준 시편 제작 및 표면 비파괴 데이터 해석 기법 연구” 등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 이행 시 필요한 실험분석장비 사용비용을 포함시켜 산출내역을 작성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유 라만분석 장비 등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해당 장비 사용 기록을 성실히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 대학의 경우 각각의 실험 분석 장비를 공동실험실습관 등에 통합 비치한 후 각각의 실험 분석 장비별 운영자를 정하여 운영하며 교내 및 외부 사용자에게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대부분의 타 대학 산학

협력단은 해당 장비 사용료를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켜 계약 후 해당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각각의 실험 분석 장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해당과 조교에게 두고 있으나 주된 사용자는 해당과 대학원생들이고, 장비 등이 분석실 1·2 유기재료분석실 등에 분산 비치됨에 따라 장비의 유지 관리 및 사용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라만분석기 등 고가 장비 설치 장소에 실습 소모품과 시료 등이 혼재되어 있는 등 고가 장비의 운영환경이 부적절하였다.



라만분석기 설치 및 운영 장소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공동실험실습관 설치·운영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시고, 고가 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발전기금의 운영 및 규정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내 용

가. 발전기금의 운영 관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을 설립한 후 발전기금을 모금하여 2016년 11월 현재 927,543,057천원이 적립되었고, 2016년 한해 모금액은 총 5인으로부터 8,220,000원이며, 기존 모금액의 이자발생액 4,557,994원을 포함한 총 12,777,994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기부출연자의 경우 '15년 6명(기업 1, 개인 5) 및 '16년 5명(개인 5명)이며, 그 중 지속적 기부자는 1명(월 2만원)으로 해당 발전기금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는 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기부출연자의 확대 및 신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홍보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다.

또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일정규모(20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발전기금 사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적정 시기별로 해당 시기까지의 모금액을 정기예금 상품 등에 예치하여 최대한의 이자를 확보함이 타당하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13년 이후 적립된 65,558,847원을 일반예금(이자율 0.1%)으로 관리하고 있다.

* 시중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1.5%('16.11월) / 2.5~3%('14.1월) / 2~2.5%('15.4월)

나. 발전기금 규정 관련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규정」을 2009.11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기 발전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발전기금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 도모를 위해 그 운영의 원칙(제1금융권 예금 적립 등)을 정하여 상기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나 【별지】 제2호 서식(지정기부금 계약서 예시)에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규정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부자와 기부 계약을 할 경우 동 규정 제6조(기부의 방법) 제2항에 따라 기부자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의 사용 목적과 방법을 지정하는 것 외에 금융권 이외의 투자처에 투자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자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 및 반대 급부가 없는 기부금의 기본 성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적립된 발전기금에 대하여 적정 시기별로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발전기금의 운영원칙을 해당 규정에 포함시키는 등 발전기금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권 고

제 목 전통문화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내 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위해 2003년 전통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으나, 2009년 동 대학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함께 연구기능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이전하였고, 전통문화연구소는 이후 국제학술세미나(년 1회)및 전통문화논총발간(년 2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자체종합감사 당시 전통문화연구소에 대해 기능을 재검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되어, 2015년 1월 전통문화연구소에서는 ①기관지인 ‘한국전통문화연구’를 학술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승격시키는 방안 모색 ② 학술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선정될 수 있는 발전 방안 모색 ③외 부단체와 협력하여 지역학 이론 창출의 모범사례 강구 ④교내 교수들의 기존 연구 활동 포섭 및 지원으로 연구 역량 강화 기여 ⑤학술연구재단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유도 및 확대 노력 등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6년 감사 시점에서 상기 발전방안 등의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전통문화연구소의 인력은 소장(동 대학 교수 겸직)외에 실습조교 1명으로 2014년과 동일하며, 사업 수행 실적 또한 기존과 같이 국제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2015년 발전 방안에 대한 수행 실적이 미미하여 전통문화연구소의 기능 개선에 대한 자체 노력이 미흡하였다.

년 도		2014	2015	2016
전통문화 연구소	예 산 액	44,800,000원	44,800,000원	44,500,000원
	집 행 액	43,300,000원	25,500,000원	-

조치할 사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전통문화연구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수행 업무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